

##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세정지원 등 안내 말씀

안녕하십니까?

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성실납세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
국세청에서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이번 8월 『22.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』과 관련하여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경우, '홈택스로 직접 신청' 또는 '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'하시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.

### |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등 |

#### ■ 연장기간 및 담보면제

- (연장기간) 3개월 이내로 하되,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
  - (담보면제) ① 일반적인 경우: 7천만원
  - ② 생산적 중소기업,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: 1억원
  - ③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: 2억원
- (\* 담보면제 기준 및 담보제공 절차에 관한 상세문의는 관할세무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)

#### ■ 신청방법 및 승인결정

- (신청방법) 국세청홈택스(로그인) ⇒ 신청/제출(클릭) ⇒ 일반세무서류 신청(클릭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⇒ 민원명 찾기에서 '납부기한 연장' 검색 ⇒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
- (승인결정) 신청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여부 결정

한편, 중간예납 신고는 ①『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(1/2)』과 ②『상반기 영업 실적에 의한 자기계산 기준(중간결산 방식)』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감소한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8월

대구지방국세청장(관인생략)

문의는 국세청 상담전화(☎126)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